

감사 결과 (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비위 조사)

1. 감사개요

□ 감사배경

- 국무조정실로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A에 대한 비위 사건 조사 결과가 산업부로 통보('24.3.6.)되어, 이에 대해 감사 실시

□ 감사기간 : 2024.03.07.~03.15(7일)

□ 처분요구일 : 2024. 04. 08

2. 감사결과

◇ (총 평) 사장 A는 국외출장시 동거녀 상습 동반(6회) 및 부당이익 제공, 외유성 관광, 공용물품 사적사용(약 1천만원 물품) 등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충실의무(상법), 품위유지의무(임직원행동강령) 등 다수 규정을 위반

* 국조실 조사시 동거녀 동반 출장은 총 5회였으나, 산업부 감사시 1건 추가 발견(총 6회)

-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, 윤리의식 결여 등 종합 고려시, 엄중한 처분 (해임건의) 필요

① 공무국외출장 부적정

- (동거녀 동반 출장) 사장A는 취임 이후 '21.11월~'24.2월까지 총 7회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으며, 이 중 6회 출장시 동거녀 동반
- (동거녀 부당이익 제공) 출장시 동거녀에게 숙박비, 식비, 교통비, 관광지 입장료 등 체류비용 총 7,651,216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 제공
- (업무 무관 관광 실시) 싱가포르(23.9.3.~9.9.), 미국·파나마(24.1.31.~2.7.) 출장시 동거녀를 동행하여 근무시간 중 관광지(유니버설스튜디오, 파나마운하) 방문
- (사적 노무 제공) 출장시 직원들은 동거녀를 위해 교통카드 구매, 기차표 구매, 관광지 입장권 구매 등 사적 노무 제공

⇒ 「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」 제27조(임원의 청렴의무) 「공사업직원행동강령」 제3조의2(청렴의무), 제18조(사적 노무 요구 금지), 공사 「임원복무에 관한규정」 제4조(성실의무), 5조(금지사항), 「상법」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)을 위반

2. 공용물품 사적사용

- (사장 개인집 물품 제공) 사장 A는 '22. 8월 동거녀와의 동거를 위해 본인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직원에게 요구하여 공사 예산으로 냉장고, 에어컨 등 총 11종 약 1 천만원의 물품을 구입·비치

⇒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13조(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), 「임직원행동강령」 제4조의2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를 위반

3. 조치 내용

□ 사장 A에 대한 처분 요구 : '해임 건의'

- 비위의 중대성 및 고의성, 윤리의식 결여(개전의 정 부족) 등을 종합 고려 시, 엄중한 처분이 필요

□ 기관직원 등 관련자 처분 요구 : '징계·주의 요구'

- [공무국외출장 부적정] 관련자 2명 “주의 요구”
 - (주의 2명) 미국·파나마 출장시 사장을 수행하여 관광지를 방문한 공급기술처장 B, 대외정비사업부 과장 C
- [공용물품 사적사용] 관련자 4명 “징계·주의 요구”
 - (징계 2명) 규정을 위반하여 사장 개인집에 공용물품 제공을 결정한 사택업무관련 인사노무처장 D 및 노사협력부장 E
 - (주의 2명) 사장 개인집에 공용물품을 구입·비치한 실무자 대리 F, 물품 구매시 동행·관여한 前 비서실장 G